

Part 1. 부가가치세 이론

제1장 부가가치세 총론

제1절 부가가치세 개념

1. 부가가치세의 의의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를 말한다.
- 부가가치란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다.

2. 부가가치세의 성격

간접세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다음 단계로 전가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납세자≠담세자)
일반소비세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물세	각 사람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이나 재산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다단계과세방식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소비지국과세원칙	국제거래 되는 재화에 대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즉, 생산지국에서는 부가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부가세를 부과한다.
면세제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3.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의미한다.

사업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자 여부와 용도 및 목적에 관계없이 재화를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납세의무자의 분류

납세의무자인 과세사업자는 연매출액 4,800만원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진다.

2018년 대구대학교 특강 자료 TAT 2급 이호진 강사
 (본 자료는 이호진 강사 교재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강사의 허락 없이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구 분			납세의무 여부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자	○	○
	면세사업자		×	×
재화를 수입하는 자			○	×

※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면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5. 과세기간

구 분		제1기				제2기			
법인 사업자		예정	1월 1일~ 3월 31일	확정	4월 1일 ~ 6월 30일	예정	7월 1일~ 9월 30일	확정	10월 1일 ~ 12월 31일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유형전환자		4,800만원 이상 또는 미만인 해의 다음해 7월 1일 ~ 12월 31일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 6월 30일				사업개시일 ~ 12월 31일			
폐 업 자		1월 1일 ~ 폐업일				7월 1일 ~ 폐업일			

6. 납세지 = 사업장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등을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하는 등에 기준이 되는 장소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그 납세지로 정하고 있다.

가. 사업장 범위

1) 업종별 사업장

업종	사업장	
광업	광업사무소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법인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업무총괄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무인자동판매업	업무총괄장소	
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주된 사업장	

2)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직매장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하치장	재화를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곳이므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임시사업장	기존사업장 외에 각종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이며 기존사업장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다.

나. 사업장별 과세원칙

각 사업장은 독립된 하나의 과세단위로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환급), 경정과 징수 등이 이루어진다.

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의 예외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일괄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납부만 가능하며, 사업자단위과세는 신고와 납부 모두 가능하다.

제2절 과세거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VAT)는 부가가치에 직접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과세를 실현하게 된다. 즉, 부가가치세법은 ① 재화의 공급 및 ②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③ 재화의 수입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다.

1.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

가.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구 분	재화의 종류	예 외(재화 아님)
유체물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	수표, 어음, 상품권
무체물	동력,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	

나. 재화의 실지공급

재화의 실지공급에는 계약상의 원인과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 계약상의 원인에는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및 현물출자가 포함된다.

다.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재화의 구입시 과세사업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최종소비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간주)한다.

구 분		내 용	예 외(과세대상 아님)
자가공급	면세사업에 전용*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사용하거나 그 유지에 사용(소비)	
	판매목적 타사업장(직매장) 반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하치장 아님)에 반출하는 것	• 주사업장 총괄납부(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재화의 공급) 및 사업자단 위과세
개인적 공급*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사용(소비)	• 작업복,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사업상 증여*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	• 견본품, 광고선전물
폐업시의 잔존재화*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	

* 생산(취득)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에는 공급의제 아님

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 분	내 용
① 담보제공	질권·저당권·양도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 제공하는 것
② 사업양도	사업장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③ 조세의 물납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를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것
④ 공매와 경매	공매,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위한 경매, 법률(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⑤ 수용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2.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의 공급	예 외(과세대상 아니거나 재화의 공급)
①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의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의 제공	
② 개인서비스업처럼 역무를 제공하는 것	고용 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③ 부동산임대업처럼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④ 특허권 등의 대여처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산업상·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의 양도
⑤ 인도받은 재화에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는 것(재화의 공급)
⑥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⑦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용역의 무상 제공)

* 일반적으로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나, 건설업은 예외적으로 용역의 공급임.

재화와 용역의 거래시기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것인가의 판단기준으로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1. 재화의 거래시기

일반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 재화의 거래시기로 본다. 이를 적용시킬 수 없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거래형태	거래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상품권 등을 현금(외상)으로 판매한 후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③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⑤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조건성취 또는 기한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⑥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재화가 사용(소비)되는 때
⑦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하는 때
⑧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공급	현금을 인취하는 때
⑨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또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	선(기)적일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⑩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재화를 공급	수입신고수리일
⑪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기준 적용

*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인도기일 다음달 – 최종부불금지급기일’이 1년 이상

2. 용역의 거래시기

용역의 거래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거래형태	거래시기
① 통상적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용역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스포츠센터(헬스클럽장) 운영사업의 연회비, 상표권의 사용대가 전액, 노인복지시설의 수영장 및 헬스클럽장 등의 이용대가 등

3. 거래 장소

재화·용역의 거래장소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1. 영세율의 의의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이미 부담한 전단계까지의 모든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제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율제도를 ‘완전면세제도’라고 부른다.

$$\text{납부(환급)세액} = \text{매출세액}(0) - \text{매입세액} = \text{매출액} \times 0\% - \text{매입액} \times 10\%$$

제2절 면세

1. 면세의 의의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면세는 해당 단계에서 적용된 매출세액은 과세하지 않으나 전단계에 이미 과세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면세 대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라 볼 수 있다.(부분면세제도)

$$\text{납부(환급)세액} = \text{매출세액}(0) - \text{매입세액}(0) = \text{매출액} \times 0\% - \text{매입액} \times 0\%$$

2. 면세 적용대상

구 분	면세 적용대상	예외(과세대상)
기초생활 필수품	· 국산과 외국산 미가공식료품(식용)* · 국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 국민주택(건설용역 포함) · 여객운송용역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 외국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생수, 유연탄 · 건물과 토지의 임대 · 항공기, 고속(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자동차대여,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국민후생 및 문화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포함) · 산후조리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 학원, 강습소 등의 교육용역 ·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 200원 이하 제조담배, 영세율 적용 제외 특수담배 · 도서(대여),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등의 입장	· 의약품 판매,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 애완동물 진료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2012.7.1.부터) · 수집용 우표, 복권과 상품권 등의 대행용역 · 방송 및 광고 · 골동품
생산요소	· 토지의 공급 ·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용역 · 금융·보험용역	· 건물의 공급
기타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 · 공익을 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용역 · 유상공급

3. 면세의 포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할 때 면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 또한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에 의해 과세업자로 전환되며 면세포기를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포기의 대상이다.

-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용역
- ②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

제3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 분	영세율	면 세
① 목 적	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출촉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② 대 상	수출재화 등	기초생활필수품 등
③ 면세정도	완전면세	불완전면세
④ 매출세액	없음	없음
⑤ 매입세액	공제됨(=전액 환급됨)	공제되지 아니함
⑥ 사 업 자	과세사업자임	과세사업자 아님
⑦ 협력의무	있음(세금계산서 발급 등)	없음(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대리납부 의무는 있음)

제4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1절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의의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2.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따른 분류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가산되지 않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과세표준에 가산되지 않는 금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및 하역비 등 마일리지 결제상당액, 판매장려물품	매출에누리액, 매출환입액, 매출할인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 후에 파손·훼손·열실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 전에 파손·훼손·열실된 재화의 가액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장기)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대가의 지연지급에 의한 연체이자
일반적 용기대금, 포장비용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및 반환보증금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된 봉사료
부동산임대료와 함께 대가로 받는 관리비	부동산임대료와 구분 징수하는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이러한 금액을 착오로 과세표준에서 차감(공제)한 경우에는 다시 가산해 주어야 한다.

제2절 납부세액

1.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환급)세액을 산출한다.

(-)	매 출 세 액	과세표준 × 세율 + 예정신고누락분 ± 대손세액*
	매 입 세 액	=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 기타공제 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 부 세 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 액 공 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가 산 세 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차가감 납부세액	= 납부세액 ± 가산·공제세액

* 공급자

2.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예정신고누락분이 있는 경우 가산하고 마지막으로 대손세액을 가감함으로써 산출된다.

매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예정신고누락분 ± 대손세액

여기서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세율은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는 10%이고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0%이다.

- 1) 예정신고누락분: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세액을 확정신고 시 신고하는 금액이다.
- 2) 대손세액: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구 분	공급자	공급받은 자
대손의 확정	매출세액 - 대손세액	매입세액 - 대손처분받은 세액
대손의 변제	매출세액 + 대손세액	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본 자료는 이호진 강사 교재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강사의 허락 없이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대손세액 공제액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대손세액 공제액} = \text{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times 10/110$$

또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이다.

3. 매입세액

매입세액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납부세액의 계산시 공제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어야 한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을 기초 금액으로 하여 기타 공제매입세액을 가산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등을 차감하여 구한다.

구 분		내 용
매입세액 공제액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 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기타공제 매입세액	① 의제매입세액 ②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③ 재고매입세액 ④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⑤ 변제대손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① 매입세액 불공제 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③ 대손처분받은 세액*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 기타공제 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공급받은 자

나. 기타공제 매입세액

1) 의제매입세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공제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전표등수령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농·어민으로부터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산식	· 일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공제율** · 겸영(과세+면세):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공제율 ×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한도: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된 공급의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

2)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구 분	내 용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취득시 면세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일부 전환할 경우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취득시 면세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해당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해당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체감률: 건물과 건축물은 5%,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건물과 건축물은 20,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4

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예 외(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불성실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불성실기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8인승 이하의 승용차, 배기량 1,000cc 초과, 지프형승용차, 캠핑용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접대비 등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복리후생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토지(면세)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내의 거래
기타: 1. 세금계산서 발급불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2.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업종 1) 목욕, 이발, 미용업 2) 여객운송업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그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실지귀속이 분명히 구분된다면 그 실지사용비율에 따라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득이하게 안분계산에 의해 실지귀속을 구분해야 한다.

구 분	내 용
계산식	$\text{공통매입세액 면세 사업분} = \text{공통매입세액} \times (\text{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text{해당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그 과세기간 이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재계산을 하여 납부 또는 환급 신고를 하여야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안분계산 없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 면세공급가액비율이 5% 미만인 경우(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2018년 대구대학교 특강 자료 TAT 2급 이효진 강사
(본 자료는 이효진 강사 교재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강사의 허락 없이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제3절 신고와 납부

1. 신고와 납부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을 6개월 단위로 양분한 제1기(1.1.~6.30.)와 제2기(7.1.~ 12.31.)로 구분하며, 각 과세기간 중 첫 3개월(1/4분기, 3/4분기)동안의 기간을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환급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 분		신고기간	신고기한
제 1 기	예정신고기간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과 세 기 간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제 2 기	예정신고기간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과 세 기 간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25일

Part II. 소득세 이론

part 1. 소득세 총설

01. 소득세의 의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에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말하며, 소득세란 이러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일컫는다.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는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로 구분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 ① 개인별 과세: 개인별 과세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공동사업합산과세는 예외)
 - ② 열거주의 과세: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한다.
 - ③ 누진세율 과세: 6%~40% 까지 각각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④ 소득공제 제도: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 ⑤ 종합과세: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예외있음)
 - ⑥ 신고납부제도: 직접 신고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⑦ 주소지 과세제도: 거주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소득의 구분
- ① 종합과세: 당해연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는 소득이다. 이들 중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으로 종결하는 소득도 있다.
 - ② 분류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다.
 - ③ 분리과세: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소득이다.

종합과세	이자소득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02. 납세의무자의 의의

납세의무자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① 거주자: 국내, 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가진다.
- ② 비거주자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가진다.
- ③ 법인이 아닌 단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가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

03. 과세기간 및 납세지

세법에 의해서 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1. 과세기간

원칙: 1월 1일 ~ 12월 31일

특례

-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 ~ 사망한 날
-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 출국한 날

2.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자가 신고, 신청, 청구, 납부 등의 행위를 할 때 과세관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납세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장소를 말한다.

- ① 거주자: 주소지 혹은 거소지
- ② 비거주자: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국내 사업장이 없을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2군데 이상에서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

04. 신고 및 분납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 ① 예정신고: 11월(직전납부액 기준 1/2, 혹은 당해연도 1월~6월을 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음)
- ② 확정신고: 5월(예외적으로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까지 신고 가능)

2. 분납

예정신고(중간예납),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② 납부할 세액에 2,000만원을 초과: 납부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01. 이자소득

이자소득이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며,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성격이 있다면 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이자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6조 1)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② 내국(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③ 국내(국외)에서 받는 예금 이자
 -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⑤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⑥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⑦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⑧ 비영업대금의 이익
 - ⑨ 기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와 할인액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
 - 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2. 비과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2조 1)

- (1) 소득세법
- ① 공인신탁이익
- (2) 조세특례제한법
- ①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 ②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 ③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3. 이자소득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채권(기명) 등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채권(무기명) 등의 이자와 할인액	지급받은 날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의 이자	지급받는 날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전에 환매수 혹은 환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지급받는 날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지급일 (단, 반환금을 분할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text{이자소득} - \text{비과세소득} - \text{분리과세 소득} = \text{총수입금액} = \text{이자소득금액}$$

02. 배당소득

배당소득이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1. 배당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7조 1)
-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인정배당

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2. 비과세 배당소득(조세특례제한법 상)
- ① 영농조합 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일정한 배당소득

② 영어조합 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일정한 배당소득

③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④ 농업협동조합 자사지분의 배당소득

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실질배당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처분 결의일 무기명주식의 이익 또는 배당: 지급받은날
의제배당	자본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 결의일 퇴사, 탈퇴: 퇴사, 탈퇴일 해산: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합병 또는 분할: 등기일
인정배당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받은날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분배금: 원본에 전입되는 날 신탁기간 연장: 연장하는 날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text{배당소득} - \text{비과세소득} - \text{분리과세소득} = \text{총수입금액} + \text{Gross-up(배당소득가산액)} = \text{배당소득금액}$$

5. 금융소득 세율

구분	내용	세율
----	----	----

이자소득	장기채권이자와 할인액	30%
	일반적인 이자소득	14%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자소득	5% ~ 14%
	비실명 이자소득	38% 또는 9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배당소득	일반적인 배당소득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	5% ~ 25%
	비실명 배당소득	38% 또는 90%

6.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을 통틀어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있다. 금액과 상관 없이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구분	내용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이자와 할인액
	비실명 이자소득과, 비실명 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출자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일반적인 이자소득, 일반적인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03.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성, 독립성, 영리목적성을 가지고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text{사업소득} - \text{비과세소득}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text{이월결손금} = \text{사업소득금액}$$

2.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 판매	상품을 인도한 날

시용판매	소비자가 구입의사를 표시한날
위탁판매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장기할부 판매	상품을 인도한 날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현금을 인출한 날
인적용역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한 날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

★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다.

6.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① 의료보건용역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3%
- ② 봉사료 수입금액: 5%

04.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급료, 봉급,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 그 명칭이나 지급 방법에 불구하고 고용관계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1. 근로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0조 1)

- ①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② 주주총회등에서 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상여
-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④ 퇴직금 중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 금액

2.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3)

- ① 식대: 월 10만원(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조건)
- ②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본인명의로 차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할 때)
- ③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수와 관계없음)
- ④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연 240만원(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월 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생산직 종사자)
- ⑤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월300만원

3.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 처분 결의일
임원,주주,사원,기타출자자에 대한 상여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소득에서 제외된 퇴직금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일용직 원천징수

- 1) 일용직이란 특정기간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자를 말한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하여야한다.

2) 일용직 원천징수

$$\text{총지급액} - \text{근로소득공제액}(10\text{만원}) = \text{과세표준} \times 6\%(\text{세율}) = \text{산출세액} - \text{근로소득세액공제}(55\%)$$

- ★ 일용직은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 간편 계산법: 과세표준 X 2.7%
- ★ 일용직은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로 남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05. 연금소득

연금소득이란 사전에 불입한 연금을 토대로 일정기간에 걸쳐 매월 또는 매년 등의 단위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1. 연금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0조의3 1)
 - ①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② 연금계좌: 퇴직보험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시 공적연금은 퇴직소득, 연금계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2. 비과세 연금소득(소득세법 제12조 4)
 -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 퇴직유족연금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③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3. 연금의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공적연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연금계좌에 따른 소득	연금을 수령한 날
그 밖의 연금소득	연금을 지급받은 날

4. 연금소득금액계산

$$\text{연금소득} - \text{비과세소득} = \text{총연금액} - \text{연금소득공제}(\text{한도 } 900\text{만원}) = \text{연금소득금액}$$

08.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우발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외의 소득법상에 열거된 소득이다.

- 1. 기타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1조 1)
 - ①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②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③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 2018년 대구대학교 특강 자료 TAT 2급 이효진 강사
 (본 자료는 이효진 강사 교재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강사의 허락 없이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 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④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⑤ 원고료,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⑥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고용관계 없이 받는 강연료, 해설, 연기심사, 수당 등)
 - ⑦ 뇌물

3.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원칙: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실제경비

특례

- ①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및 당첨금품: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②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당첨당시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③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무형자산 양도나 대여, 주택임주 지체상금, 지역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여 받는 금품, 원고료, 인세, 창작품 대가 등: MAX(총수입금액 × 70%, 실제필요경비)

4. 기타소득금액계산

$\text{기타소득} = \text{비과세 소득} - \text{분리과세소득}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text{기타소득금액}$
--

5. 기타소득 세율

구분	세율
복권당첨금품 등	20%(3억원 초과분은 30%)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15%
그 밖의 기타소득	20%

6. 기타소득 종합과세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당첨금품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01. 종합소득공제

1. 기본공제

		공제대상	나이	소득금액	공제금액
기본 공제	본인공제	본인	-	-	인당 150만원
	배우자공제	배우자	-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 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 제 가능)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		
		장애인	-		
		직계존속 (본인,배우자)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미만		

- ★ 해당 과세 기간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 ★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 소득금액 계산 정리		
종류	소득금액 계산	비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공제가능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퇴직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제외)	퇴직금 100만원 이하 공제가능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1세대 1주택이외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공제가능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공제대상범위	공제금액
추가 공제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	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본인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으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연 50만원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 는 경우	연 100만원

		★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	-------------------	--

02. 종합소득 세율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38%
3억 초과 5억 이하	40%
5억 초과	42%

※ 시험 포인트

- ★ 보험료 : 기본공제 대상자만 공제 가능 (나이제한 O 소득제한 O / 단 배우자 예외)
- ★ 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어도 공제 가능 (나이제한 X 소득제한 X)
- ★ 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 나이제한 X 소득제한 O
- ★ 교육비 : 나이제한 X 소득제한 O
근로자 본인 = 대학원 까지 가능 (한도 없음)
나머지 : 대학생 한도 900만원 /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등생 한도 300만원
미취학아동은 학원비 가능 / 나머지 학원비 불가능
- ★ 기부금 : 기본공제 대상자만 공제 가능